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문진석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2332
----------	-------

발의연월일 : 2025. 8. 25.

발 의 자 : 문진석 · 김문수 · 복기왕
이연희 · 박수현 · 정준호
강명구 · 강득구 · 이정문
최혁진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장애인 등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이동편의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으며, 교통행정기관은 교통수단과 여객시설에 대한 면허·허가·인가 등을 하는 경우 교통수단과 여객시설에 설치된 이동편의시설이 설치기준에 맞는지를 심사(이하 “기준적합성 심사”)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 기준적합성 심사는 교통행정기관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이동편의시설을 실제로 사용하는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의견을 충실히 반영한 심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의견이 제기됨. 또한 장애인 등의 안전하고 편리한 시설·설비 이용을 위하여 편의시설 설치기준을 정하고 있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서는 편의시설 설치기준 적합성 확인 업무를 장애인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대행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기에 법률

간 일관성 확보 측면에서 현행법을 개정할 필요성이 대두됨.

이에 교통행정기관이 기준적합성 심사 업무를 장애인 등 교통약자 관련 법인 또는 단체가 대행하게 할 수 있도록 하여 심사 과정에 교통약자의 의견이 충실히 반영되도록 함으로써 효과적인 제도 운영과 실질적인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12조의2 신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의2(기준적합성 심사 업무의 대행 등) ① 교통행정기관은 제12조에 따른 기준적합성 심사 업무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장애인 등 교통약자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심사 업무의 대행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심사 업무를 담당하는 법인 또는 단체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u>제12조의2(기준적합성 심사 업무의 대행 등) ① 교통행정기관은 제12조에 따른 기준적합성 심사 업무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장애인 등 교통약자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대행하게 할 수 있다.</u> <u>② 제1항에 따른 심사 업무의 대행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u> <u>③ 제1항에 따라 심사 업무를 담당하는 법인 또는 단체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u>